

#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재공고

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「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」 참여업소 모집을 재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. 8. 20.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
### 1 사업 개요

□ 지원업소 수 : **음식점 40개소**

※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업소 수 변동 가능

□ 지원 내용

○ **업소당 시설개선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 80% 지원)**

☞ **업소 자부담 : 공급가액의 20%, 지원금액 초과분, 부가가치세**

예시1 : 시설개선 비용이 220만원인 경우(공급가액 200만원, 부가가치세 20만원)

☞ 지원 보조금 160만원(공급가액 80%)

☞ 업소 자부담 60만원(공급가액 20%+부가가치세 20만원)

예시2 : 시설개선 비용이 330만원인 경우(공급가액 300만원, 부가가치세 30만원)

☞ 지원 보조금 200만원(공급가액 80%, 단 최대 200만원 한도)

☞ 업소 자부담 130만원(공급가액 20%+초과분+부가가치세 30만원)

○ 시설개선 지원 범위

구 분	지원 범위	비 고
일반음식점	- 조리장 및 영업장 내 노후 시설(화장실 포함) 개보수	영업과 관련이 없거나 신규 기자재, 비품, 소모품 구매 <sup>1)</sup> 는 지원 제외
휴게음식점	- 환풍기 후드 덕트 등 환기시설	
제과점	- 방제 시설개선 및 방역	

1) 냉난방기, 냉장·냉동고, 단순 집기류, 일회용품 등

## □ 신청대상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강남구 소재 음식점

- ▶ 대상업종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
  -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업소
  - 영업장 면적 200㎡ 이하 업소
  - 연매출 5억원 이하 업소
- ▶ 제외대상
  -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영업정지(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포함)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업소
  -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소
  - 위반건축물이 있는 업소

## □ 사업 추진 일정

사업공고 및 신청접수	⇒	보조금 지원대상 심의·선정	⇒	사업 수행 및 보조금 교부 신청	⇒	보조금 지급 및 정산
8월		9월		9~10월		11월~12월

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## 2 신청 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5. 8. 20.(수) ~ 8. 27.(수)

□ 신청방법 : 방문 접수, 이메일(E-mail)

방 문 접 수	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, 강남구보건소 2층 위생과 위생지원팀 (평일 업무시간만 방문 접수 가능)
이 메 일 (E-mail)	<a href="mailto:sy3445@gangnam.go.kr">sy3445@gangnam.go.kr</a> (업소명 제목에 기재)

## □ 신청 제출 서류

- ①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<붙임1~2>
- ② 지원사업 시행 전 현장사진 1부 <붙임3>
- ③ 개인정보처리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<붙임4>
-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1부
- ⑤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
-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※ 국세 납세증명서 불가

###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

선정 절차

- ① 1차(서류심사) : 제출서류 지원 적격 여부 및 내용 검토
- ② 2차(현지조사) : 신청 위생업소 현지조사 실시
- ③ 3차(위원회 심의) :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

선정 시기 : 2025. 9월 중

선정 안내방법 : 선정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

심사항목 및 기준

항 목	배 점	평 점 기 준
시설개선 필요성	20	- 매우 필요(20점) - 필요(17점) - 보통(13점) - 미흡(10점)
직전년도 매출액	20	- 5천만원 미만(20점) - 5천만원 이상~1억 미만(17점) - 1억 이상~2억 미만(14점) - 2억 이상~3억 미만(10점) - 3억 이상~5억 미만(7점)
영업장 면적	20	- 33㎡ 이하(20점) - 33㎡ 초과~66㎡ 미만(17점) - 66㎡ 초과~100㎡ 미만(14점) - 100㎡ 초과~200㎡ 미만(10점)
사업장 운영기간	20	- 15년 이상(20점) - 10년 이상~15년 미만(17점) - 5년 이상~10년 미만(13점) - 3년 이상~5년 미만(10점)
지원 우선순위 (중복시 가점 높은 1개만 적용)	15	- 위생등급 지정업소(15점) - 모범음식점(10점), 효사랑음식점(10점) - 효사랑헤어샵(10점) -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"녹색등급" (5점) - 그 외 기타 <sup>2)</sup> (5점)
프랜차이즈 여부	5	- 非 프랜차이즈(5점) - 프랜차이즈(0점)
계	100	

※ 동점 시 매출액, 운영기간, 면적 순으로 우선 선정

2) 음식점 인증제도 지정 : 농림축산식품부 안심식당, 서울시 백년가게 등

## 4 시설개선 사업 수행

### □ 지원대상자 선정 시

- 선정대상자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개선 공사를 착공 및 완료하고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

### □ 지원대상자 준수사항

- ▶ 보조금을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
- ▶ 보조금을 지원받고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함
  - ※ 예외 : 영업부진,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나 지위승계로 동종의 영업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
- ▶ 지원대상자 통보 이전에 시설개선을 시행한 경우 선정 취소
- ▶ 타 지자체로 사업장 이전 또는 휴·폐업 하는 경우 선정 취소

### □ 지원신청 내용 변경 시

- 사업내용,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승인 후 수행 <붙임9> 제출

## 5 보조금 지급 신청

### □ 보조금 지원 절차

- ① 사업 추진 :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 시설 개선 완료
- ② 교부 신청 :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보조금 신청 서류 제출
- ③ 보조금 지급 : 교부 신청서류 확인 후 사후 지급 (필요시 현장 확인)
  - ☞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류 신청 내역과 공사 전·후 증빙 사진 확인

### □ 보조금 신청 시 제출 서류

- ① 시설개선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각 1부 <붙임5~6>
- ② 지원사업 시행 후 현장사진 1부 <붙임7>
- ③ 청렴이행서약서 1부 <붙임8>
- ④ 세부견적서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
- 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1부
  - ※ 간이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내역서 불가
- ⑥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

□ 강남구보건소 위생과 위생지원팀

☎ 02-3423-7076

✉ sy3445@gangnam.go.kr

- 붙임**
1.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 1부
  2.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
  3. 지원사업 시행 전 현장사진 1부
  4. 개인정보처리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  5.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금 신청서 1부
  6. 위생업소 시설개선 완료보고서 1부
  7. 지원사업 시행 후 현장사진 1부
  8. 청렴이행서약서 1부
  9.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계획 변경요청서 1부